

세액감면(면제)신청서

※ 제4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(5쪽 중 제1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1 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대표자 성명	④ 생년월일	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	

2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	년 월 일까지
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3 신청 내용							
구	분	근거법령	코드	⑥ 감면율	⑦ 대상세액	⑧ 감면세액	⑨ 한도충족 감면세액
101	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5조제26항	110				
102	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5조제26항	111				
103	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	영 제5조제26항	174				
104	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감면	영 제5조제26항	13E				
105	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 면	영 제6조제8항	112				
106	기술이전에 대한 감면	영 제11조제6항	13J				
107	기술대여에 대한 감면	영 제11조제6항	13K				
108	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조의2제10항	17C				
109	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조의2제10항	179				
110	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감면	영 제27조의2제4항 (2007.2.28. 대통령령 제 198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90				
111	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	구 영 제30조의2제7항	192				
112	무역조정지원기업의 사업 전환에 대한 감면	구 영 제30조의2제7항	13A				
113	혁신도시 등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감면	영 제58조제11항	13F				
114	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(중소기업의 수도권 인 구감소지역 안으로 이전)	영 제60조제9항 (구 영 제60조제5항 포함)	116				
115	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세액감면 (수도권 밖으로 이전)	구 영 제60조제5항	169				
116	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액 감면(수도권 밖으로 이전)	영 제60조제9항 (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)	108				
117	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에 대 한 세액감면	영 제60조의2제16항 (구 영 제60조의2제13항 포함)	109				
118	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감면	영 제61조제8항	117				
119	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면제	영 제63조제7항	104				

구 분	근거법령	코드	⑥ 감면율	⑦ 대상세액	⑧ 감면세액	⑨ 한도충족 감면세액
⑫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면제	영 제64조제8항	107				
⑫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(농업소득)	영 제65조제5항	11B				
⑫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(농업소득 외의 소득)	영 제65조제5항	119				
⑫ 사회적기업에 대한 감면	영 제79조의7제2항	11L				
⑫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	영 제79조의7제2항	11M				
⑫ 행정중심복합도시·혁신도시 공장이전에 대한 감면	법 제85조의2제6항 (2019.12.31. 법률 제1683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	11A				
⑫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	영 제96조제8항	13I				
⑫ 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감면	영 제96조의2제5항	13N				
⑫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99의8제7항	11N				
⑫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99의8제7항	13S				
⑬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의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	영 제99조의10제5항	17D				
⑬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감면	영 제102조	124				
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 한 감면(철수방식)	영 제104조의2제13항	11F				
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 한 감면(유지방식)	영 제104조의2제13항	11H				
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4제5항	18I				
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4제5항	13P				
⑬ 제주투자진흥지구·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5제8항	182				
⑬ 제주투자진흥지구·제주자유무역 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5제8항	13Q				
⑬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영 제116조의5제8항	158				
⑬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제7항	197				
⑬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제7항	13R				
⑬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	영 제116조의2제7항	198				
⑬ 지역개발사업구역, 지역활성화지역 또는 낙후지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 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제7항	102				

⑭ 지역개발사업구역, 지역활성화지역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제7항	1E1				
⑭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활성화지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영 제116조의2제7항	1D3				
⑮ 해양박람회특구 창업·사업장신 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제7항	1D4				
⑮ 해양박람회특구 창업·사업장신 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제7항	1E2				
⑮ 해양박람회특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영 제116조의2제7항	1D5				
⑮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·사업 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 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제7항	1D6				
⑮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창업·사업 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 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제7항	1E3				
⑮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	영 제116조의2제7항	1D7				
⑮ 평화경제특구 창업·사업장신설 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 용제외)	영 제116조의2제7항	1D8				
⑮ 평화경제특구 창업·사업장신 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제7항	1E4				
⑮ 평화경제특구 개발사업지행자에 대 한 감면	영 제116조의2제7항	1D9				
⑮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제8항	11C				
⑮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제8항	13T				
⑮ 금융중심지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에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제11항	11G				
⑮ 금융중심지 창업·사업장신설기업 대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제11항	13U				
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제8항	17A				
⑮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의료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감면 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제8항	13H				
⑮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 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2제8항	17B				
⑮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 한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2제8항	13V				
⑮ 기화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법 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 적용제외)	영 제116조의3제8항	1D1				
⑮ 기화발전특구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법 인세 등의 감면(최저한세 적용대상)	영 제116조의3제8항	1C1				
⑮ 기타		164				
⑮ 세액 감면 합계		1A4				

- ④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내용**(¹⁰⁸, ¹⁰⁹, ¹¹⁸, ¹²⁸, ¹²⁹, ¹³⁴부터 ¹⁶³까지에 대해 적용)
- ¹¹⁸은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하되, 2019.1.1. 전 입주기업은 제외함(A방식)
 - ¹²⁸, ¹²⁹는 2018.1.1. 이후 지정 또는 선포된 위기지역의 지정일 또는 선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19.1.1.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함(A방식)
 - ¹⁰⁸, ¹⁰⁹, ¹³⁴부터 ¹⁶³까지의 경우 2019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는 A 방식에 의해 한도를 계산하되, 2019.1.1. 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B 방식(종전규정)에 의해 한도를 계산함

¹⁰ 직전 과세연도까지의 감면세액 누계

* 감면받은 과세연도 / 감면세액: (/), (/), (/), (/), (/)

전체 감면한도 계산

A	⑪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자산 투자누계액			
	⑫ 투자기준 감면한도 (⑪ × 50%)			
	⑬ 고용기준 감면한도 [해당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× 1,500만원(청년 상시근로자와 서비스업을 하는 감면대상사업자의 상시근로자의 경우에는 2,000만원)]			
	⑭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(⑫ + ⑬)			
B	일반기업		서비스업	
	⑮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사업용고정 자산 투자누계액		⑲ 일반감면한도 (=⑮)	
	⑯ 투자기준 감면한도 (⑪ × 50%)		⑳ 고용기준 감면한도 (Min [a, b])	
	㉑ 고용기준 감면한도 (Min [a, b]) a 상시근로자 수 × 1,000만원 b 투자누계액 (⑮ × 20%)		a 상시근로자 수 × 2,000만원 b 투자누계액 (⑮ × 100%)	
	㉒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(⑯+㉑)		㉓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총감면한도 (Max [⑲, ㉒])	

²²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 (¹⁴ - ¹⁰) 또는 (¹⁸ - ¹⁰) 또는 (²¹ - ¹⁰)

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감면한도 계산

구 분	해당(직전)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												²³ 합계	²⁴ 개월수	²⁵ 상시근로자수 (= ²³ ÷ ²⁴)
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		
해당 과세연도															²⁶
직전 과세연도															²⁷

감면한도계산 : 1억원 - 500만원 ×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

감면한도 (상시근로자 감소 적용 전)	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당 차감액	²⁸ 상시근로자 수 감소인원(²⁶ - ²⁷)	²⁹ 감면한도 (1억원 - 500만원 × ²⁸)
1억원	500만원		

⑥ 사회적기업·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감면한도 계산

구 분	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												³⁰ 합계	³¹ 개월수	³² 상시근로자수 (= ³⁰ ÷ ³¹)
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월			
해당 과세연도															◆

감면한도계산 : 1억원 + 2000만원 × (취약계층 또는 장애인)의 상시근로자 수

감면한도 (상시근로자 적용 전)	상시근로자 수 인원당 증가액	³² 상시근로자 수	³³ 감면한도 (1억원 + 2000만원 × ³²)
1억원	2000만원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와 같이 세액감면(면제)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 귀하

작성방법

1. 신청 내용별로 "⑥ 감면율"란, "⑦ 대상세액"란과 "⑧ 감면세액"란을 적습니다.
2. "⑥ 감면율"란을 작성할 때 법령의 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등에는 해당 감면율을 적습니다.
3. "⑦ 대상세액"란: 최저한세액 적용 전의 감면세액을 적습니다.
4. "⑧ 감면세액"란: "⑦ 대상세액"에서 최저한세액 적용에 따른 감면 배제세액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
5. "⑨ 한도총측 감면세액"란: "⑥ 감면세액"과 "㉔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한도" 중 적은 금액을 적습니다.
5. 법령에 따른 첨부서류는 세액감면(면제)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.
6. 법령의 개정으로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에 따라 세액감면(면제)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조문순서에 따라 빈칸 등에 별도로 적습니다.
7. ㉔ 지역특구 입주기업 감면한도 계산 시 서비스업이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.
8. 근거법령란에서 "법"은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"영"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을 뜻하며, "구 영"은 2021. 2. 17. 대통령령 제3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.